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김호진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호진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가산금 및 독촉 업무 처리시 근거로 하고 있는 「국세징수법」이 개정되어 근거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변경해 향후 조례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